

##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튜닝부품 인증기준·인증 방법 및 절차,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규정 마련 (안 제40조의11제1항)

-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튜닝검사 기간 관련 규정 개선(안 제56조제3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개선

다.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과 튜닝부품인증을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라.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4)
- 마.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5)
-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의6)
- 사.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108조, 별지 제73호의2서식)
- 이륜자동차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 대비표 서식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및 확인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제작된”을 “위한”으로 한다.

제40조의11의 제목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를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제3호의4·제7호 또는 제8호에 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휴대전화”를 “및 휴대전화”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 중 “또는 휴대전화”를 “및 휴대전화”로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10일”을 각각 “20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관이나 제56조의2”를 “외관, 제2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장치 및 법 제34조의3”으로, “튜닝용 부품”을 “튜닝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자동차 튜닝검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튜닝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2의 제목“(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을“(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튜닝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할 것

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기능을 유지하며 성능이 우수하거나 형상이 변경되는 것

나.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

2. 자동차에 안전성, 편의성, 보호 기능 등을 위해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부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할 것

가.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형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  
나. 튜닝부품에 적합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6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튜닝부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4(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인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각인할 것. 다만, 부품의 특성상 각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튜닝 및 튜닝부품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5의9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시설 및 인력 확보 현황
3.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 처리 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신청기관의 인증 능력
4. 튜닝 및 튜닝부품 관련 업무 수행실적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

정·변경지정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때 까지 또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튜닝부품인증 현황을 확인하고 튜닝부품인증 업무 대행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한 튜닝부품인증 업무가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풍장치를 튜닝하거나 그 밖에”를 “방풍장치, 제55조제2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장치 및 튜닝인증부품 등”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4호 서식”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으로, “일시 및 장소”를 “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을 “제3항에 따라”로,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10일이 경과되는 경우 그 사실”로 한다.

1.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준 적합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확인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기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튜닝확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별표 5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1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56조의5 관련)

1. 다음 각 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가.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나.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되어 있을 것
2. 튜닝부품인증검사에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과의 협약서가 있는 경우 시험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아래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을 보유할 것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가. 튜닝부품인증제도 기획,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유관기관 협력	-	1명
나. 튜닝부품인증 접수 및 고객 대응	-	1명
다. 튜닝부품인증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한 자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라. 튜닝부품인증기준 마련 및 관리	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졸업 또는 관련업계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차정비자격증소지자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한 자	2명
마. 튜닝부품시험기관 관리 및 튜닝부품제조사 사후관리	가.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차정비자격증소지자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구분	[     ] 국제 제작자 식별부호(WMI)		[     ] 국가공통부호			
사용하려는 표기부호 (WMI)	둘째자리					
	셋째자리					
사용하려는 표기부호 (국가공통부호)	둘째 자리	부호				
		표기 차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표기부호 (WMI)			배정부호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표기부호 및 표기내용 (국가공통부호)			배정부호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표기대상자동차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국토교통부장관</span> <span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10px; margin-left: 20px; font-weight: bold;">직인</span> </p>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 ] 표기시행 폐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표기	폐지사유		
	폐지에정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제작자등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표기시행자의 변경(성명,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표기시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7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 원제작자와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한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자기인증능력 확보 유무		[ ] 확보	[ ] 미확보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등록목적		[ ] 판매목적	[ ] 자가사용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 ] 완성자동차	[ ] 미완성자동차	
자동차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종류	규모		
	[ ] 승용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승합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화물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특수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이륜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실적)</li> <li>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li> <li>「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li> <li>「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li> <li>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 계약서가 한글이 아닌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li> <li>등록증(잃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li> <li>변경내용 설명자료(변경등록 신청만 해당합니다)</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li> <li>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ol>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성능시험대행자 /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210mm×297mm[백상지(80a/㎡) 또는 중질지(80a/㎡)]

##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최초 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자동차부품명(생산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b>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b>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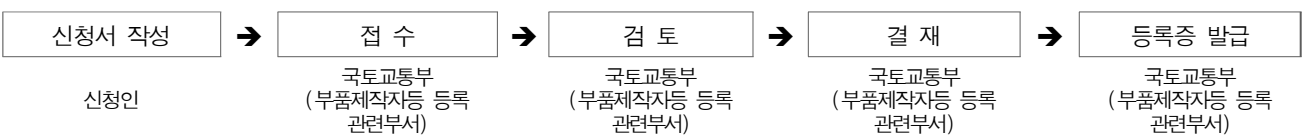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잇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b>자 동 차 제 원 표</b>																																											
1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명			6	종별																																						
3	형식			7	유형																																						
4	차대·차체형상			8	구분																																						
5	승차정원(명)			9	용도																																						
10	차량중량(kg)			22			원동기			사용연료																																	
11	최대적재량(kg)									내연기관			형식																														
12	차량총중량(kg)												구동장치			최고출력(ps/rpm)																											
13	차체 제원 (mm)	길이														구동축전지			기통수/총배기량(cc)																								
		너비																	형식																								
		높이																	개수																								
14	하대 내측 지수 (mm)	길이																	구동축전지			최고출력(KW/rpm)																					
		너비																				정격전압/용량(V/Ah)																					
		높이																				형식																					
15	하대옵셋트(mm)																					23			연료소비율			개수															
16	공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하이브리드 시스템			항목												
			후축																												모드												
		후	전축		복합			시가지																							고속												
			중축		최고출력(KW)																																						
17	적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24			1회충전주행거리(km)																																			
			후축																																								
		후	전축					25			윤간거리(mm)																																
			중축								전																																
18	축별설계 허용하중	전	전축								26			후																													
			후축											종류																													
		후	전축											타이어 형식			단수																										
			중축														전																										
19	축간거리(mm)			27													구동방식			후																							
																				후축			전축																				
20	제작허용총중량																			28			차대번호(1 ~ 8자리)			중축																	
21	모델연도																									29			자율주행시스템			후축											
22	변속기						30																									선택사양											
23	축별설계 허용하중	전	전축																																31			비고					
			후축																																								
		후	전축																																								
			중축																																								
24	축간거리(mm)																																										
25	제작허용총중량																																										
26	모델연도																																										
27	변속기																																										
28	축별설계 허용하중																																										
29	축간거리(mm)																																										
30	제작허용총중량																																										
31	모델연도																																										
32	변속기																																										
33	축별설계 허용하중																																										
34	축간거리(mm)																																										
35	제작허용총중량																																										
36	모델연도																																										
37	변속기																																										
38	축별설계 허용하중																																										
39	축간거리(mm)																																										
40	제작허용총중량																																										
41	모델연도																																										
42	변속기																																										
43	축별설계 허용하중																																										
44	축간거리(mm)																																										
45	제작허용총중량																																										
46	모델연도																																										
47	변속기																																										
48	축별설계 허용하중																																										
49	축간거리(mm)																																										
50	제작허용총중량																																										
51	모델연도																																										
52	변속기																																										
53	축별설계 허용하중																																										
54	축간거리(mm)																																										
55	제작허용총중량																																										
56	모델연도																																										
57	변속기																																										
58	축별설계 허용하중																																										
59	축간거리(mm)																																										
60	제작허용총중량																																										
61	모델연도																																										
62	변속기																																										
63	축별설계 허용하중																																										
64	축간거리(mm)																																										
65	제작허용총중량																																										
66	모델연도																																										
67	변속기																																										
68	축별설계 허용하중																																										
69	축간거리(mm)																																										
70	제작허용총중량																																										
71	모델연도																																										
72	변속기																																										
73	축별설계 허용하중																																										
74	축간거리(mm)																																										
75	제작허용총중량																																										
76	모델연도																																										
77	변속기																																										
78	축별설계 허용하중																																										
79	축간거리(mm)																																										
80	제작허용총중량																																										
81	모델연도																																										
82	변속기																																										
83	축별설계 허용하중																																										
84	축간거리(mm)																																										
85	제작허용총중량																																										
86	모델연도																																										
87	변속기																																										
88	축별설계 허용하중																																										
89	축간거리(mm)																																										
90	제작허용총중량																																										
91	모델연도																																										
92	변속기																																										
93	축별설계 허용하중																																										
94	축간거리(mm)																																										
95	제작허용총중량																																										
96	모델연도																																										
97	변속기																																										
98	축별설계 허용하중																																										
99	축간거리(mm)																																										
100	제작허용총중량																																										
101	모델연도																																										
102	변속기																																										
103	축별설계 허용하중																																										
104	축간거리(mm)																																										
105	제작허용총중량																																										
106	모델연도																																										
107	변속기																																										
108	축별설계 허용하중																																										
109	축간거리(mm)																																										
110	제작허용총중량																																										
111	모델연도																																										
112	변속기																																										
113	축별설계 허용하중																																										
114	축간거리(mm)																																										
115	제작허용총중량																																										
116	모델연도																																										
117	변속기																																										
118	축별설계 허용하중																																										
119	축간거리(mm)																																										
120	제작허용총중량																																										
121	모델연도																																										
122	변속기																																										
123	축별설계 허용하중																																										
124	축간거리(mm)																																										
125	제작허용총중량																																										
126	모델연도																																										
127	변속기																																										
128	축별설계 허용하중																																										
129	축간거리(mm)																																										
130	제작허용총중량																																										
131	모델연도																																										
132	변속기																																										
133	축별설계 허용하중																																										
134	축간거리(mm)																																										
135	제작허용총중량																																										
136	모델연도																																										
137	변속기																																										
138	축별설계 허용하중																																										
139	축간거리(mm)																																										
140	제작허용총중량																																										
141	모델연도																																										
142	변속기																																										
143	축별설계 허용하중																																										
144	축간거리(mm)																																										
145	제작허용총중량																																										
146	모델연도																																										
147	변속기																																										
148	축별설계 허용하중																																										
149	축간거리(mm)																																										
150	제작허용총중량																																										
151	모델연도																																										
152	변속기																																										
153	축별설계 허용하중																																										
154	축간거리(mm)																																										
155	제작허용총중량																																										
156	모델연도																																										
157	변속기																																										
158	축별설계 허용하중																																										
159	축간거리(mm)																																										
160	제작허용총중량																																										
161	모델연도																																										
162	변속기																																										
163	축별설계 허용하중																																										
164	축간거리(mm)																																										
165	제작허용총중량																																										
166	모델연도																																										
167	변속기																																										
168	축별설계 허용하중																																										
169	축간거리(mm)																																										
170	제작허용총중량																																										
171	모델연도																																										
172	변속기																																										
173	축별설계 허용하중																																										
174	축간거리(mm)																																										
175	제작허용총중량																																										
176	모델연도																																										
177	변속기																																										
178	축별설계 허용하중																																										
179	축간거리(mm)																																										
180	제작허용총중량																																										
181	모델연도																																										
182	변속기																																										
183	축별설계 허용하중																																										
184	축간거리(mm)																																										
185	제작허용총중량																																										
186	모델연도																																										
187	변속기																																										
188	축별설계 허용하중																																										
189	축간거리(mm)																																										
190	제작허용총중량																																										
191	모델연도																																										
192	변속기																																										
193	축별설계 허용하중																																										
194	축간거리(mm)																																										
195	제작허용총중량																																										
196	모델연도																																										
197	변속기																																										
198	축별설계 허용하중																																										
199	축간거리(mm)																																										
200	제작허용총중량																																										
201	모델연도																																										
202	변속기																																										
203	축별설계 허용하중																																										
204	축간거리(mm)																																										
205	제작허용총중량																																										
206	모델연도																																										
207	변속기																																										
208	축별설계 허용하중																																										
209	축간거리(mm)																																										
210	제작허용총중량																																										
211	모델연도																																										
212	변속기																																										
213	축별설계 허용하중																																										
214	축간거리(mm)																																										

## 튜닝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 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검사대행자가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정한 금액

#### 유의사항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습니다.
3.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제원관리번호

###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1	소유자 주소											
2	성명			3	최초등록일							
4	등록번호			5	종별							
6	차명			7	구분							
8	형식			9	차체형상							
10	승차정원(명)	튜닝 전	튜닝 후	11	유형	튜닝 전	튜닝 후					
12	차량중량(kg)			13	용도							
14	최대적재량(kg)			사용연료								
15	차량총중량(kg)											
16	차체 제원 (mm)	길이		26	원동기	내연기관						
		너비				형식						
		높이				최고출력(ps/rpm)						
17	하대 내측 지수 (mm)	길이				구동전동기						
		너비				형식						
		높이				개수						
18	하대옵셋트(mm)	길이				구동축차지						
		너비				형식						
		높이				개수						
19	공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열회차지					
			후축									
		후	전축		형식							
			중축		개수							
20	적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하이브리드 시스템							
			후축									
		후	중축				항목	모드	복합	시가지	고속	
			후축				연비(km/ℓ, km/kWh, km/kg)					
21	적재시 타이어 하중율 (%)	전	전축		27	열회차지	1회충전주행거리(km)					
			후축									
		후	중축				28	윤간거리(mm)	전			
			후축						후			
22	적재시 타이어 하중율 (%)	전	전축		29	변속기	종류					
			후축				단수					
		후	전축				30	타이어 형식	전	전축		
			후축							후축		
후	중축		후	전축								
	후축			중축								
23	적재시앞바퀴하중분포율	(%)	(%)	31	구동방식							
24	축간거리(mm)			32	차대번호(1 ~ 8자리)							
25	제작허용총중량											
26	모델연도											
33	튜닝 개요											
34	비고											



제 호  <h2 style="margin: 0;">튜닝 승인서</h2>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및 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원동기형식
튜닝 승인 내용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튜닝 검사 기간	○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  ※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를 연장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법인명(단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재지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5제3항·제6항에 따라  
 [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튜닝부품인증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튜닝부품인증기관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3. 튜닝부품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4. 튜닝부품 인증업무 처리규정	수수료 없음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지정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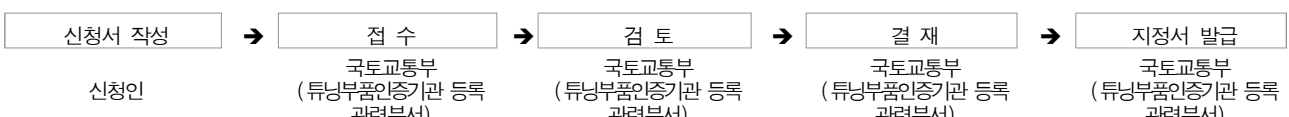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붙임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별지 제50호의2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제 호</span>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튜닝 검사 증명서</span> </div>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표시		등록번호			차 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주요 제원	차체	길이	cm	승차정원		명	원동기출력	ps/rpm
		너비	cm	최대적재량		kg	총배기량	cc
		높이	cm	차량중량		kg	연료의 종류	
	실내 · 하대	길이	cm	차량총중량		kg	축간거리	cm
		너비	cm	축 하 중	전륜	kg	윤 간 거 리	cm
		높이	cm		후륜	kg		최저 지상고
튜닝 이력								
최종 튜닝 수수료								
<p>「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0 2px;">인</span></p>								

210mm×297mm

일반용지 70g/m<sup>2</sup>

<b>이 룬 자 동 차 제 원 표</b>							
1	제 작 자 명		제작자등록번호				
	원 제 작 자 명		(제작국가명)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 체 형 상		8	구 분			
5	승차정원(명)		9	용 도			
10	차량중량(kg)		사용연료				
11	최대적재량(kg)		20	내연기관	형 식		
12	차량총중량(kg)	( )			최 고 출 력 ( ps / r p m )		/
					기 통 수 / 총배기량(cc)		/
13	차체 제원 (mm)	길이		( )	구동전동기	형 식	
		너비		( )		개 수	
		높이		( )		최 고 출 력 ( kW / r p m )	
14	하대 내측 치수 (mm)	길이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 ( V / Ah )	
		너비				형 식	
		높이				개 수	
15	하대옵셋트(mm)			21	하이브리드시스템		
		연료소비율(km/ℓ)					
16	공차 시 하중분포 (kg)	전축	( )	22	윤간거리(mm)	전	( )
		후축	( )			후	( )
17	적차 시 하중분포 (kg)	전축	( )	23	변 속 기	종류	
		후축	( )			단수	
18	축간거리(mm)			24	타이어형식 [허용하중(kg), 허용압력(kg/cm <sup>2</sup> )]	전	
						후	
19	모델연도기호		25	림 형 식		전	
20						후	
21	모델연도기호		26	차대번호(1~8자리)			
22	선 택 사 양						
23	비 고						

**유의사항**

※ 작성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륜 자동차	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차명	
	형식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수수료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검사대행자가
	3. 튜닝 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정한 금액

###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각 호의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 이륜자동차 튜닝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1	소유자주소			3	사용신고일자						
2	성명			5	제원관리번호						
4	등록번호			7	연식						
6	차명										
		튜닝 전	튜닝 후			튜닝 전	튜닝 후				
8	승차정원(명)			23							
9	차량중량(kg)										
10	최대적재량(kg)										
11	차량총중량(kg)										
12	차체 제원 (mm)	길이									
		너비									
		높이									
13	하대 내측 지수 (mm)	길이									
		너비									
		높이									
14	하대옵셋트(mm)										
15	공차시 하중분포(kg)	전			24	연료소비율	항목	모드	복합	시가지	고속
		후					연비(km/ℓ, km/kWh, km/kg)				
16	적차시 하중분포(kg)	전					1회충전주행거리(km)				
17	적재시 타이어 하중율 (%)	전				25	변속기	림	전		
		후						형식	후		
18	타이어 형식	전				26	구동방식	종류			
		후						단수			
19	적재시앞바퀴하중분포율	(%)	(%)								
20	축간거리(mm)										
21	제작허용총중량										
22	차대번호(1 ~ 8자리)										
28	튜닝 개요										

## 이륜자동차 튜닝확인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자동차	번호		차명	
	튜닝확인 기간			
신청내용	연장신청 기간			
	연장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연장 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u>위해 제작된</u> 자동차를 말한다.</p> <p>1. 2. (생략)</p> <p>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 또는 제7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생략)</p> <p>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p>	<p>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 ----- ----- ----- ----- 위한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11(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제3호의4·제7호 또는 제8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② ~ ④ (생략)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 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자동차 튜닝검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튜닝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질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튜닝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할 것

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기능을 유지하며 성능이 우수하거나 형상이 변경되는 것

나.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

2. 자동차에 안전성, 편의성, 보호 기능 등을 위해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부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충족할 것

가.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형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 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튜닝부품에 적합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6조의3(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3제

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6조의5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

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

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튜닝부품인증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튜닝부품

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인증 심사 기

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

에 따른 심사결과 튜닝부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

급하고, 그 결과를 제56조의6제

<신 설>

1항에 따라 운영하는 튜닝부품  
인증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  
에 따른 심사결과 튜닝부품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  
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56조의4(튜닝인증부품의 인증  
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인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각인할 것. 다만, 부품  
의 특성상 각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견  
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  
할 것

2.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

<신 설>

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튜닝 및 튜닝부품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5의9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월 전까지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17 서식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시설 및 인력 확보 현황
3.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 처리 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신청기관의 인증 능력
4. 튜닝 및 튜닝부품 관련 업무 수행실적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⑥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자동차 튜닝  
부품인증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변  
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  
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  
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  
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  
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4조

의4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때 까지 또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튜닝부품인증 현황을 확인하고 튜닝부품인증 업무 대행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한 튜닝부품인증 업무가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생 략)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  
-----  
-----  
-----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  
-----  
----- 장소-----  
-----  
-.

③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준 적합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기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튜닝확

